



항만 입국자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

귀하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로부터 만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.

국내 입항 후 주의사항

- ✔ 모든 하선자는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박 또는 지정장소에서 대기
※ 단, 보안구역 내에서 작업(갱웨이 설치, 선박고정작업, 흘수 측정 등)하는 자는 진단검사 제외
- ✔ 입국자 ① 내국인: 자가격리 앱 설치 후 14일간 자가격리
② 외국인: 자가진단 앱 설치 후 14일간 시설격리
- ✔ 상륙허가자* 및 재승선 내국인**: 자가진단 앱 설치 후 14일간 능동감시
*상륙허가자: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
**재승선 내국인: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

격리자 생활수칙

- ✔ 격리대상자
 -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
 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
 -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이 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도움 요청하기
 -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
 - 개인용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
 -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
- ✔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
 -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
 -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
 -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
 - 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
 -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(학교, 학원, 어린이집, 유치원, 사회복지시설,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등)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,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하기

항만 입국자를 위한 주의사항 안내



개인 위생수칙

- 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
- ✔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- ✔ 발열,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
- ✔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✔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

복지부 <모바일 자가진단앱>
Self Diagnosis Mobile APP

안드로이드·아이폰



행안부 <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>
Self-Quarantine Safety Protection APP

안드로이드 다운



구글 플레이



앱 스토어



위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
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되며,
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
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.